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49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최혁진 · 이수진 · 염태영
김우영 · 정혜경 · 윤종오
한창민 · 윤준병 · 전진숙
전종덕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임에도, 최근 일부 기업·공공기관 등이 언론·시민·노동자를 상대로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정정보도 요구·형사고소 등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승소 자체보다 소송 그 자체로 상대를 격리·위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 가능성을 위축하고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며 시민들의 공익 참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이에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특별각하신청 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반소) 등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략적 봉쇄소송의 개념을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 등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민사상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에 의한 각하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법원은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 비용 외에 피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금지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참여행위”란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언론보도·논평·비평 또는 그 밖의 정보전달행위

나. 집회·시위·토론회·공청회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 또는 서면발표

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청원·진정·고소·고발 또는 의견제출

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내부 고발행위

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바. 그 밖에 공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심사에 대

한 의견표명 행위

2.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 등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민사상 소송을 말한다.

3.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라.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3조(특별각하신청) ①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전략적 봉쇄소송의 각하 여부에 관한 재판은 원고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 「민사소송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신속심리)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담보제공명령)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각하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담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비용 및 손해배상의 담보로 한다.

제6조(즉시항고) 제3조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각하 결정 또는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부담) ① 법원은 제3조의 신청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사 보수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법원은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 비용 외에 피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9조(반소) ① 피고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반소가 제기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소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